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와(QIA) 몽골 국가전문감독청(GASI) 간의

동·식물 검역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

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몽골 국가전문감독청은 (이하 "양측") 동·식물 검역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지원 및 발전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제 1조 목적

본 양해각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(OIE), 국제식물보호협약(IPPC)에서 정의한 동·식물 검역 분야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.

제 2조 범위

1. 양측은 상대방 측의 요청이 있을 시 동·식물 검역 분야의 법률, 규정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.

2. 양측은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양측의 실험실 검사 방법 및 방법론을 교환하고 연구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.

3. 양측은 상대방 측의 요청이 있을 시 동·식물 수출입 검역과 관련된 위반 또는 불이행 사항을 상호 간 통지한다.

4. 양측은 동·식물 검역 분야의 과학 연구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동의 하에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 교육 제공, 합동 훈련 및 세미나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.

제 3조 이행

1. 양측은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에 근거하여 본 양해각서의 협력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연락 담당 부서를 지정한다.

2. 본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되는 협력 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면, 회의 또는 다른 방식의 연락을 통해 양측이 공동으로 결정한다

3. 양측은 상호 동의 하에 한국과 몽골에서 합동회의를 마련한다.

제 4조 비용

본 양해각서의 이행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은 매건 상호 동의 하에 결정한다.

제 5조 분쟁 해결

본 양해각서의 해석 및/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양측 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 6조 재검토

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언제라도 재검토 될 수 있다.

제 7조 최종 조항

1. 본 양해각서는 서명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5년간 유효하다.

2. 본 양해각서는 어느 한 측이 상대방 측에게 만료 6개월 전까지 양해각서의 수정 및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매 5년마다 효력이 연장된다.

3. 어느 한 측은 상대방 측에게 6개월 이전에 서면통보함으로써 언제라도 본 양해각서를 종결시킬 수 있다.

4.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상호 서면동의 하에 수정될 수 있다.

5.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.

본 양해각서는 2016년 5 월 19 일 서명되었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,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.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.

박 봉 균	
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대표하여	**몽골 국가전문감독청을 대표하여**